

2024대비 황보수정 공인노무사 민법 족보 (민법총칙)

기출은 그대로 반복됩니다. 40문제로 변형된 시험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소원손동하겠습니다. (황보수정올림)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칙

1. 민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원은 법률, 관습법, 판례 그리고 조리이다.(X)
2. 민법 제1조(法源)에서의 '법률'은 국가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X)<노무사 2015>
3.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노무사 2015>
4. 판례에 의하면 성문법과 관습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이 있다고 한다.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

5. 다음 중 반드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는? 채권자취소권
6. 수취인과 달리 수임인은 유상·무상을 묻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신의성실의 원칙

7.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5.12.22, 94다42129).<노무사 2018>
8.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노무사 2022>
9.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될 여지가 없다.(X) <노무사 2022>
10.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될 수 있다. (X)<노무사 2022>
11.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공인노무사 2018유사>
1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한다.(X)
13.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만이 포함된다.<노무사 2022>
14.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15.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X) <공인노무사 2018>
16.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X)<공인노무사 2018>
17. 임대차계약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 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노무사 2022>
18. 취득시효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된다.(X)<공인노무사 2018>
19. 상계권에서도 권리남용이 인정되나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X)
20. 백화점의 부도로 인하여 백화점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백화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백화점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액면가에 훨씬 미달하는 가격으로 취득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21.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의칙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할 뿐 이를 법률행위의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없다. 따라서 신의칙과 형평의 관념 등 일반 원칙에 의해 개별 약정의 효력을 제약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되며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변호사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이를 감액할 수는 없다.(X)<법행 2022>

제4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1절 자연인

22.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X)<노무사 2016>
23.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노무사 2016>
24.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X)<노무사 2016>
25. 특정후견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X)<노무사 2016>
26.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필요는 없다.(X)<노무사 2016>
27.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노무사 2023>
28. 미성년자 甲과 행위능력자 乙 간의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甲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데 이때 그 동의는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X) <공인노무사 2020>
29. 미성년자 甲과 행위능력자 乙 간의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乙은 계약체결 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X) <공인노무사 2020>
30. 위 지문에서 甲이 단독으로 乙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한능력을 이유로 甲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X) <공인노무사 2020>
31. 위 지문에서 계약체결 시 乙이 甲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甲이 만 20세라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의 법정대리인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20>
32. 위 지문에서 甲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위 계약이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甲의 부당이득반환범위는 그 법정대리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진다.(X) <공인노무사 2020>
33.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공인노무사 2019>
34. 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면제계약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공인노무사 2022>
35.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가능

하다.<공인노무사 2022>

- 36.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공인노무사 2022>
- 37.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공인노무사 2022>
- 38.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공인노무사 2023>
- 39.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한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행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공인노무사 2022>
- 40.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으나, 법정대리인은 위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노무사 2018유사>
- 41.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공인노무사 2019>
- 42. 관례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말하였을 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은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변시 2016>
- 43.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44. 2018년 12월 1일 오후 4시에 출생한 자는 2037년 12월 1일 0시에 성년이 된다.<공인노무사 2019>
- 45.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공인노무사 2019>
- 46.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공인노무사 2019>
- 47.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2021 공인노무사>
- 48.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노무사 2015>
- 49.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2017노무사>
- 50.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2023노무사>
- 51.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그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유지된다.(×)<2017노무사>
- 52.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다.(×)<2017노무사><2018노무사>
- 53. 성년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된다.(×)<2017노무사>
- 54.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2017노무사><2018노무사>
- 55.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2023노무사>
- 56.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고,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1년이다.
- 57.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58.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실종기간 동안 생존하였다는 반증을 제출하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있다. (X)
- 59.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60.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1.3.23, 71다189).
61.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대판 1981.7.28, 80다2668).
6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처분권까지 부여하였더라도, 이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면 위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3.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00.12.26, 99다19278).
64.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개입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18>
65.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허가도 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18>
66.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가 사망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공인노무사 2018>
67.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2018>
68.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18>
69.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70.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의미: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결 2011.1.31, 자 2010스165)
71.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2.7.14, 92다2455).
72.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73. 관례에 의하면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74.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고,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75. 주소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정주(定住)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주의 의사도 있어야 한다.(×)

제2절 법 인

76. 종중 규약에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정함이 없으면,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은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X)
77. 일부 교인들이 탈퇴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함으로 탈퇴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X)
78.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
79.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애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대판 2008.5.29, 2008다4537).

80. 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81.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82.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83.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수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84.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공인노무사2020>
85.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X)
86.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설립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X)
87.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일부 사원은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면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X)
88.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공인노무사 2021>
89.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X)
90.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나, 재단법인이 그 소유권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이다.<세무사 2016>
9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X)<공인노무사 2021>
92.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명채권은 대외적으로는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행해진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X)<공인노무사 2021>
93.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공인노무사 2021>
94.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타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X)<공인노무사 2021>
95.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면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X)<공인노무사 2021>
96.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만 법인에게 귀속할 뿐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공인노무사2020>
97.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노무사 2016>
98.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자기의 불법행위책임을 면

- 한다.(×) <공인노무사2020>
99.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노무사 2016>
100.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노무사 2016>
101.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노무사 2016>
102. 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구(舊) 이사만이 직무수행권을 가진다.(X)<노무사 2016>
103.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09.11.26, 2009다57033).
104.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3.7.25, 2002다27088).<변리사 2011><변리사 2016>
10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공인노무사 2020>
106.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4.3.26, 2003다34045).
107.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또는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법원사무관 2016><법무사 2016><2017 법무사>
108.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법인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109.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공인노무사 2018>
110.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하여도 상속할 수 없다.(×)<공인노무사2020>
111.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이상 타인으로 하여금 포괄적 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12.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13. 이사가 결원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노무사 2021>
114.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 <노무사 2015>
115.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대결 전합 2009.11.19, 자 2008마699).
116.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17. (사단법인 甲과 그 대표이사 乙)甲과 乙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乙은 대표권이 없다.<노무사 2023>
 118. 감사는 재단법인에서는 필요기관이지만, 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 변 리 사 2015>
 119.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10분의 1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20. 사원총회의 소집정족수를 사원 4분의1 이상으로 정한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121.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사원의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없다.(×)<노무사 2016>
 122. 사원총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노무사 2016>
 123.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노무사 2016>
 124. 사원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총회의 결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노무사 2016>
 125. 사원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가 도달해야 한다.(×).<노무사 2016>
 126.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이 때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는 상법 제368조 제4항, 제371조 제2항의 유추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대판 2009.4.9, 2008다1521).
 127.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정관에 지정한 바 없고,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총회의 결의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128. 청산법인이나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이다.
 129. 청산종결등기가 행해졌다면 청산사무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권리능력은 소멸된다.(×) <공인노무사2020>
 130.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공인노무사2021>
 131. 법인은 평상시에는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지만 해산·청산의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132.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공인노무사 2018>
 133.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공인노무사 2018>
 134. 주무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18>
 135.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공인노무사 2018>
 136.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

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판 2003.7.22, 2002다64780).

137.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정관으로 제한된 경우, 비법인사단은 그 등기가 없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악의라면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20>
138.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공인노무사 2021>
139.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전합 2007.4.19, 2004다60072).
[동지판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3.7.22, 2002다64780).
140.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11.26, 2009다64383).
14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142.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어서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행한 총유물인 건물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2003.7.11, 2001다73626).
143.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20>
144.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대판 2012.4.13, 2011다70169).
145. 민법 제62조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으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1.4.28, 2008다15438).
146.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20>
147. 대표자로부터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자의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친다.(×)<공인노무사 2021>
148. (민법상 사단법인 甲과 그 대표이사 乙) 乙이 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丙이 甲의 사무를 집행한 경우, 丙의 그 사무집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노무사 2023>
149.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하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 해산한 후 그 구성원들이 나뉘어 여러 개의 법인 아닌 사단들을 설립하는 경우,

종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이 허용된다(대판 2008.1.31, 2005다60871).
<변시 2016>

150. 기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정판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법행 2011><변리사 2008>, 집합건물의 관리단, 지역단체(동·리나 자연부락), 채권자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선어중매조합,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 어촌계, 사단법인의 하부조직<법행 2011>
151. 권리능력 없는 사단(부정판례): 농지위원회,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변시 2012><법행 2015>,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회, 학교
152. 갑회사가 을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을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017 법무사>
153.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후 가처분 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된 경우 집행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대표이사가 앞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대판 2008.5.29, 2008다4537).<법행 2015><법원 2018>
15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155.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56.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19>
157.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은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19>
158.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공인노무사 2019>
159.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19>
160.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공인노무사 2019>
161.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집단으로 탈퇴하면 2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분열되고, 이때 각 비법인사단은 종전의 재산을 구성원 수의 비율로 총유한다.(×)<공인노무사 2020>
162.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

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대판 전합 2006.4.20., 2004다37775).

163.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X)<변시 2023>

제5장 권리의 객체

164.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미친다.<공인노무사 2019>
165. 주물·종물 법리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의 소유권과 그 건물의 부지에 관한 건물소유자의 토지임차권 사이에도 유추적용 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22>
166.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X) <2017노무사>
167. 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2017노무사>
168.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공인노무사 2020>
169. 임대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2017노무사>
170.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의 과실이다.(X)<공인노무사 2019>
171.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X)<공인노무사 2020>
172.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2017노무사>
173. 부동산은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도 될 수 있다.<2017노무사>
174.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도 종물이다.(X)<변리사 2016><노무사 2018유사>
17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X)<노무사 2016>
176.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X)<노무사 2018>
177.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공인노무사 2020>
178.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21>
179. 주물 소유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노무사 2016>
180.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종물이 될 수 없다.<공인노무사 2020>
181.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2021>
182.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2023>
183. 주물·종물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인 소유의 물건 사이에서 인정된다.<공인노무사 2022>
184.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노무사 2016><노무사 2018유사>
185.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노무사 2016><노무사 2018유사>
186.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종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 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노무사 2016>
187.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제2항의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X)<공인노무사 2021>
188.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 않은 이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대판 1992.4.28, 91다32527).
189.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고 매수인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공인노무사 2021>
190.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한 후, 그 부동산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공인노무사 2023>
191.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제자에게 승계된다.<노무사 2015>
192.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골은 제사주제자에게 승계된다.<노무사 2023>
193.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도 원칙적으로 중물이 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19>
194. 주유소 지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중물이다.(×)<공인노무사 2019>

제6장 법률행위의 목적

195.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2.12.27, 2000다47361)
196. 소송사건에 증인으로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2017노무사>
197.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노무사 2015>
198.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대판 2005.7.28, 2005다23858).<사시 2013><법행 2015>
199.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은 그 목적에 대한 보험자의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공인노무사 2022>
200. 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법원의 직권감액이 가능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여지가 없다.(×)<공인노무사 2022>
201.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변시 2023>
20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공인노무사 2022>
203.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공인노무사 2022>
204.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X)<감정평가사 2016>
205.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X)<공인노무사 2021>
206.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22>
207. 농성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신분상

- 불이익 처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노사 간의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1992.7.28, 92다14786).
208.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이다(대판 2001.4.24, 2000다71999).
209. 주식투자가와 증권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및 투자수익보장약정, 일임매매약정이 일체로서 체결되었으나 그 중 투자수익보장이 무효인 경우, 약정 당시 고객이 투자수익 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및 일임매매약정에 기하여 주식거래가 계속되어 새로운 법률관계가 계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면,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이나 일임매매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6.8.23, 94다38199).
210.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판 전합 2015.7.23, 2015다200111).<세무사 2016>
211.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12. 피해 당사자가 공박, 경술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으면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X)
213.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자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2017노무사>
214. 급부 상호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노무사 2023>
215.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X)<노무사 2023>
216.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노무사 2023>
217.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무사 2023>
218. 경매 목적물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X)<2017노무사>
219.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박, 경술,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공인노무사 2018유사>
220.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X)<2018노무사>
22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2018노무사>
222.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23. 계약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당

- 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X)<변리사 2016>
224. 민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X)<2017노무사>
225.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판 2010.7.15, 2009다50308).
226.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공인노무사 2021>
22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박’이라 함은 ‘공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대판 2011.9.8, 2011다35722). <공인노무사 2018유사>
228.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대판 1994.6.24, 94다10900).
229.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공인노무사 2021>
230.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공인노무사 2021>
231.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공박, 경술,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거나 공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69.7.8, 69다594).
23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세무사 2016>
233. 증여계약은 민법 제104조에서의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공인노무사 2020>
234.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공박, 경술,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X)<공인노무사 2020>
235.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공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36.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공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X)<공인노무사 2020>
237.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공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2021>
238.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공박, 경술,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X)<공인노무사 2020>
239.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X)<2017노무사>

제7장 법률행위의 요소 -의사표시-

240.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41.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242.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인노무사 2020>
243.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모르는 데 과실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244.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 후 즉시 재입사하여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2017노무사>
245.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공인노무사 2020>
246.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017노무사>
247.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그 사직서의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2017노무사>
248. 학교법인이 그 학교의 교직원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주채무자로서 책임이 있다.<2017노무사>
249.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여 일부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직원 제출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2017노무사>
250.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대판 1997.12.12, 97누13962).
251. 비리공무원이 감사기관의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이 된 경우, 그 사표제출자의 내심에 사직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공인노무사 2020>
252.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자가 고지된 해약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라 할 수 없다.<공인노무사 2020>
253.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그 명의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대판 1996.9.10, 96다18182).
254. 법률상의 장애로 자기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부담의사를 가지지 않으므로 그가 행한 대출계약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공인노무사 2020>
255. 甲이 乙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해 乙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甲이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정

- 허위표시이다. (×) <2017노무사>
256. 甲이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사실을 모르는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면 甲은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7노무사>
257.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양도에 관한 합의 외에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17노무사>
258.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2021노무사>
259.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X)
260. 통정허위표시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21노무사>
261.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로 될 수 없다.(×) <공인노무사 2022>
262.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식하였다면 그 불일치에 대하여 양자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공인노무사 2022>
263.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무효의 대항력 유무는 제3자의 선의만이 판단기준이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2017노무사>
264.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265.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계약에 기해 발생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법무사 2018>
266.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267.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X) <공인노무사 2021>
268.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권자는 선의이더라도 통정 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22>
269.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2017노무사>
270.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로 등장하는 경우, 모든 파산 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의 선의가 인정된다.(×)<공인노무사 2022>
271.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판 2006.11.10, 2004다10299).

제3자에 해당하는 예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
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58다636)<사시 2013> ②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①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② 재산권을 가장양도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 ③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

자(70다466)<변리사 2013> ③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을 설정받은 자<사시 2013> ④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 ⑤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4289민상580)<변리사 2013> ⑥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⑦ 가장행위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2003다70041)<사시 2013> ⑧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한국자산관리공사(2002다31537)]<변시 2014>내지 채권질권자<사시 2013> ⑨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자(98다20981) ⑩ 가장의 가등기 및 분등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후의 양수인(94다12074) ⑪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허위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99다51258)<사시 2014등 빈출> ⑫ 가장채권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2004다68366)<사시 2008> 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2013다59753)<법행 2014>	을 양수한 자(주의) ④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근로자 甲이 乙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丙에게 가장양도 하였으나, 乙 회사가 아직 퇴직금을 가장양수인 丙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퇴직금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丁에게 이전된 경우, 퇴직금채무자 乙 회사(82다594)]<변시 2014> ⑤ 주식이 가장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회사 ⑥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⑦ 토지임차인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가장양도한 경우의 토지소유자 ⑧ 가장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3자 ⑨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⑩ 가등기약정에 이은 가장양도 후의 가등기권자 (80다1403)<변시 2014> ⑪ 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 본인이나 법인 ⑫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상속받은 상속인
---	--

27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73. 甲이 乙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丁이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라면 비록 丙이 악의라 하더라도 허위표시자는 그에 대하여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법무사 2018>
27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이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2022노무사>
275.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법무사 2018>
276.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공인노무사 2021>
277. 통정허위표시로서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공인노무사 2021>
278. 어음 발행행위에도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가 적용될 수 있다.<법무사 2018>

279.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X)
280.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X)
28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X)<주무관 2017><2017 법원행시유사>
282. 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2023노무사>
283.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2023노무사>
284.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23노무사>
285. 사기에 의해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표의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2023노무사>
286. 경과실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X)<2023노무사>
287. 소송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송상의 화해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88.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공인노무사 2018>
289. 소송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X)<공인노무사 2019>
290.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X)
291.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 중 동기에 착오가 있고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법행 2022>
292.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공인노무사 2018>
29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X)<공인노무사 2018>
294.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18>
295.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18>
296.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97.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6다41457).⇒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보증인의 착오가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한 사례
298. 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

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6.10, 93다24810).

299.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의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대판 1996.12.6, 95다24982).
300.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4.11.27, 2013다49794). <변시 2016><사무관 2017유사>
301.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X)<감정평가사 2016>
30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X)<감정평가사 2016>
30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7.8.22, 97다13023).
304.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없다.(X)<노무사 2015>
305.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대한 착오는 이른바 내용의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X)<세무사 2016>
306.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X)<공인노무사 2019>
307.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공인노무사 2019>
308.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X)<공인노무사 2019>
309.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X)<공인노무사 2021>
310. 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X)<공인노무사 2021>
311.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다.(X)<공인노무사 2021>
312. 표시상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표의자는 제3자의 기망행위를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21>
313.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X)<공인노무사 2021>
314.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X)<공인노무사 2019>

315.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X)<노무사 2015>
316.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 모두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실제로 합의하지 않은 토지(Y)를 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실제로 합의된 토지(X)가 매매목적물이다.<2017노무사>
317.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출연자가 대리인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계약의 반환청구권자는 자금출연자이다.(X)<2017노무사>
31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모든 후발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X)<2017노무사>
319. 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된다.(X)<2017노무사>
320. 甲이 乙의 행세를 하여 乙 명의로 丙과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丙으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고, 丙이 甲을 매수인으로 알고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乙과 丙이다.(X)<2017노무사>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의 유형]

①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채권자와 제3자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判)<변리사 2006>, ②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③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 재건축조합이 건축사 자격이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과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있다고 믿고 그와 재건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判)<법행 2008>, ④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⑤ 상해의 정도·결과 및 치료기간 등에 관한 착오, ⑥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 목적물의 수량(지적)의 부족에 관한 착오 [비교] but 물건의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 및 범위와 현저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判)<변리사 2014>, ②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변리사 2015등 빈출>,

③ 목적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착오 ④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소비대차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의 법률효과는 동일하므로 공정증서가 연대보증인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이라고 할 수 없어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대판 2006.12.7, 2006다41457)<공인노무사 2020>

[중대한 과실의 존부]

①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i) 토지매수인이 공장설립 가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경우(判)<변리사 2004>, ii)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

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判)<법행 2014>

- ② 중대한 과실이 부정되는 경우: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인 소장자인 매수인이 그 출처의 조회나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한 점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判)<변리사 2004>

32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2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X)
323.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32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란 취소 전부터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제3자에 한한다.(X)<변리사 2016>
32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의 강박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26.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무사 2015>
327.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2.9.4, 2000다54406).
328.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노무사 2016>
329.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노무사 2016>
330.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노무사 2016>
331.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X)<노무사 2016>
332. 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무사 2016>
333. 민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9.11, 2008다15278).
334.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대판 2003.5.13, 2002다73708).
335.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6.12.23, 95다40038).
336.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

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대판 1998.3.10, 97다55829).

- 337. 민법 제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판 1973.10.23, 73다268).
- 338.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X)
- 339.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340.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34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세무사 2016>

[발신주의]

-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15)
- ②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131)
- ③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확답(§455②)
- ④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531)
- ⑤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71)

- 342.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X)
- 343.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X)
- 344. 격지자 사이의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발신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X)
- 34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통지한 경우에도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X)<변리사 2016>
- 34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아파트 공동 출입구의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X)<노무사 2016>
- 347.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노무사 2016>
- 348.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 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노무사 2016>
- 349.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서 제출 당시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권한 대행자의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노무사 2016>
- 350.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판 1997.11.25, 97다31281).
- 351.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

정을 둔 경우, 사임의사를 표시한 이사가 정관에 따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대판 2008.9.25, 2007다17109).

352.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더라도,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353.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노무사 2016>
354. 대리인 乙이 자신을 본인 甲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 내일 지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甲이 아닌 乙에게 귀속된다.(×)<공인노무사 2020>
355.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된 경우, 대리인이 수려한 상대방의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노무사 2016>
356.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거래의 사정을 잘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노무사 2016>
357.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의해 소멸한다.(×)<노무사 2016>
358.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노무사 2016><법무사 2018>
359.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공인노무사 2019>
360.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자신이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법무사 2018>
361.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X)<노무사 2015>
362. 매매계약체결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공인노무사 2019>
363.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공인노무사 2019>
364.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원리금반환채무 변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그 원리금반환채무를 면제해 줄 대리권도 있다.(X)<공인노무사 2020>
365.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도 있다.<법무사 2018>
366.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무권대리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법무사 2018>
367.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는 위임관계가 성립한다.(X)
368.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369.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

- 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 하여서도 할 수 있다.
370.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 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371.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중 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 집된 중중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372.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무권 대리행위의 그 일부는 유효하게 된다.(X)
37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 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374.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X)<노무사 2016>
375. 표현대리의 성립을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 는 말이 사용되어야 한다.(X)<노무사 2016>
376.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X)<노무사 2016>
377.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X)<노무사 2016>
378.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 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X)
379.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노무사 2016>
380.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성립할 수 없다.<법무사 2018>
381. 일상가사대리권도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382. 소송상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당연히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X)
383. 대리인의 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84.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거래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385.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와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X)<감정평가 사 2016>
386.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 우에 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387.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 도록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 리는 성립할 수 없다. (X)
388.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 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 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38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공법상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으로서의 적격성을 가진다.

- 390.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 391.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392. 대리인이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한 경우, 그가 한 입찰은 무효이다.<노무사 2015><2017 법무사>
- 393. 본인이나 대리인의 사망의 경우는 물론, 본인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의 경우에도 대리권은 소멸한다.(X)
- 394.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39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017노무사>
- 396.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 397.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나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는 이와 다르다.(X)
- 398.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대판 2009.1.30, 2008다79340).
- 399. 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X) <변리사 2015>
- 400.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이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 40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402. 본인은 임의대리인이 제한능력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법무사 2014>
- 403.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및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 404.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2.8, 93다39379). <노무사 2015>
- 405.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공인노무사 2021>
- 406.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19>
- 407. 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21>
- 408. 대리인의 쌍방대리는 금지되나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므로, 쌍방의 허락이 없더라도 경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X)<공인노무사 2021>
- 409.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X)<공인노무사 2019>
- 410.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공인노무사 2021>
- 411. 대리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X)<공인노무사 2022>
- 412.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

다.<공인노무사 2022>

- 413.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공인노무사 2022>
- 414.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소멸된다.<공인노무사 2022>
- 41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공인노무사 2022>
- 416. 수인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각각 상충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장 먼저 체결된 계약만이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공인노무사 2020>
- 417. 甲에 의해 대리인으로 선임된 乙이 甲의 승낙 없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甲에게 귀속된다.(×)

<변시 2015>

- 418.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대리인의 일종인 법인의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없다.(×)
- 419.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2020>
- 420.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甲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421.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 422.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인바, 아파트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그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로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9.9.3, 97다56099).
- 423.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다.
- 42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감정평가사 2016>
- 425.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보조자 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변리사 2016>
- 426.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세무사 2016>
- 427. 사채알선업자는 어느 일방만의 대리인이 아니고 채권자쪽을 대할 때에는 채무자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채무자쪽을 대할 때에는 채권자측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대판 1993.1.15, 92다39365).
- 428. 사채알선업자가 대주와 차주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사채알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한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공인노무사 2021>
- 429.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대판 1996.7.12, 95다49554).
- 430.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23>
- 43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공인노무사 2023>
- 432.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제134조의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23>
- 433.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

다.(×)<공인노무사 2023>

434.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공인노무사 2023>
435.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98.6.12, 97다53762).
436.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전합 1983.12.13, 83다카1489).<세무사 2016><사시 2010등 빈출><2017 법원행시>
437.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대판 1994.2.22, 93다42047).
438.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은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439.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대판 1979.3.27, 79다234).
440.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대판 2002.6.28, 2001다49814).[비교판례]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93.2.23, 92다52436).
441.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교회 재산에 관한 교회대표자의 권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2017노무사>
442.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4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18>
444. 복임권이 없는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22>
445. 하나의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공인노무사 2022>
446.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행한 무권대리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22>
447.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무권대리한 경우, 그 제한능력자는 무권대리인

으로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22>

448. 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인장의 위조나 행사가 범죄행위가 된다 하여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66.6.28, 66다845).
449.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乙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변리사 2015>
450. 민법 제127조에 규정된 대리권의 소멸사유에는 본인의 사망, 본인의 파산,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등이 있다.(×)
451.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민법 §128),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8.6.12, 2008다11276).
45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판 1981.4.14, 80다2314).
453. 무권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45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
455. 타인의 형사책임을 수반하는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그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67.12.18, 67다2294).
456. 甲이 乙의 무권대리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乙의 추인이 있을 경우 위 매매계약은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457.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458. 甲의 대리인 丙은 乙과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이 甲의 인장 등을 무단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발급 받아 乙과의 매매계약을 대리하는 경우, 丙의 무권대리행위를 알지 못한 乙은 甲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甲과의 계약을 철회하여 丙을 상대로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철회를 하면 계약자체가 확정적 무효가 된다. 즉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134단서). 따라서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되는 최고권과는 다르다. 또한 철회가 있으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없게 되며, 상대방도 무권대리인에게 책임(§135)을 물을 수 없게 된다.
459.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민법 제135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60.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2.27, 2013다213038).<법행 2014, 2015><법무사 2016><사무원

2017><2017 법무사>

461.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2017노무사>
462.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함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1965.8.24, 64다1156).
46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상대방이 그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된다.(○)
464.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안하고 방임하는 경우, 본인의 대리권 수여가 중단될 수 있다.<2017노무사>
465.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계약상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면 본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없다.(×)<2017노무사>
466.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대리한 경우 본인이 추인을 하여도 언제나 무효이며 무권대리인도 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2017노무사>
467. 대리인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면, 그 계약의 해제권 및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에게 부여된다.(×)<2017노무사>
468.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2017노무사>
469.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가 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2017노무사>
470.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2017노무사>
471.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2017노무사>
472.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2017노무사>
473. 무권대리인이 부담하는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선택권은 상대방이 갖는다.<2017노무사>
474. 무권대리인의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2017노무사>
475.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공인노무사 2018>
476.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다.<공인노무사 2018>
477.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공인노무사 2018>
478.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479.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480. 대리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대리인이나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상,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481. 대리행위가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482.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483. 민법 제132조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만을 추인의 상대방으로 규정하지만,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도 가능하다.
484. 무권대리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인 경우, 본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2021노무사>
485.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2021노무사>
486. 상대방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본인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할 수 없다.(×)<2021노무사>
487.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2021노무사>
488.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2021노무사>

제9장 조건. 기한

489. 甲과 乙이 빌라 분양을 甲이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 물건은 甲이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위 특약사항은 미분양 물건 세대를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분양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을 정한 것이다.(X)
490.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대판 1993.9.28, 93다20832).
[비고판례]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11.24, 2006다35766).
<변시 2015>
491.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2021>
49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1983.4.12, 81다카692).
493.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급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X)<공인노무사 2021>
494.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

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5.13, 2003다10797).

<변시 2015등 민출>

495.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X)<공인노무사 2023>
496.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공인노무사 2023>
497.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23>
498.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23>
499.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공인노무사 2023>
500.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공인노무사 2020>
501.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10.13, 2004다21862).
502.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변리사 2015>
503.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대판 1998.12.22, 98다42356).
504.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4.1.15, 2002다3891).
505.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방해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대판 1998.12.22, 98다42356).
506.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X)
507. 상계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X)
508. 혼인이나 이혼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X)
509.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510. 장래에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도 조건이 될 수 있다.(X)
511. 장래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도래할 것이 확실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512.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513.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법률행위는 유효로 한다.(X)
514.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515.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X)<공인노무사 2020>

516.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X)<공인노무사 2020>
517. 입양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518.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X)<공인노무사 2018>
519.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공인노무사 2018>
520.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18>
521.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X)<공인노무사 2021>
522.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공인노무사 2018>
523.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X)<공인노무사 2020>
52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공인노무사 2018>
525.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26.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27.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X)
528.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29.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대판 2005.11.8, 2005마541). <법행 2015등
빈출>
530. 약혼 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성립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X)
531. '대금이 완납되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은 해제조건이다.(X)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판 1996.6.28. 96다14807).(정지조건이다.)<공인노무사 2020>
532.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를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533.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534.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535.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없다.(X)
536. 법률행위에 부가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X)
537.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X)
538. 법률행위에 부가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X)

539.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19>
540.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공인노무사 2019>
541.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도 있다.<공인노무사 2019>
542.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공인노무사 2019>
543.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권리가 성립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X)<공인노무사 2019>
544. 조건의 성취가 미확정인 권리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X)
545.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감정평가사 2016>
546.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547.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48.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X)<노무사 2016>
549.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X)<노무사 2021>
550.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X)<노무사 2016>
551.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2017노무사>
552.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X)<노무사 2022>
553.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X)<노무사 2022>
554.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 전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2017노무사>
555.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2017노무사>
556. 당사자의 특약이 없거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X)<2017노무사>
557.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2017노무사>
558.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불법조건만 무효이며,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X)<노무사 2016>
559.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다.(X)<노무사 2021>
560. 기한의 효력은 기한 도래시부터 생기며 당사자가 특약을 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노무사 2016>
561.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X)<노무사 2016>
56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때이다.(X)
56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

게 있다.

564.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의 권리의무는 담보로 할 수 없다.(X)
565. 경계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부 경계의 경우에는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걸려 있게 된다.<법무사 2018>
566.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설령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법무사 2018>
567.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없다.(X)<법무사 2018>
568.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 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법무사 2018>
569. 무상임치의 경우 수취인에게는 기한의 이익이 없다.
570.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X)
571.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7 노무사>
572.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1.4.28, 2010다89036).
573.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X)<감정평가사 2016>
574.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X)<변시 2023>
575.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변시 2023>
576.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포기의 효과는 소급효를 갖는다.(X)
577.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1.10.12, 99다56192).
578.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X)<노무사 2022>
579.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02.9.4., 2002다28340).
580. 기한의 이익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X)

581.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본다.(X)
<노무사 2022>
582.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대판 1989.9.29, 88다카14663).
583.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노무사 2022>
584.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58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586.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을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총회 일시가 10월 1일 오후 2시인 경우 9월 24일 오후 12시까지는 소집통지를 발신하여야 한다.(X)
587.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1주일 전에 통지한다고 할 때에 총회일이 10월 19일이라면 늦어도 10월 11일 자정까지는 사원에게 총회소집통지가 발신되어야 한다.
588.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지, 만 53세가 만료하는 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대판 1973.6.12, 71다2669).
589.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대판 1982.2.23., 81누204).
590.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X)<노무사 2022>
591.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노무사 2023>
592. 정관상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하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23년 6월 2일(금) 10시인 경우, 총회소집통지는 늦어도 2023년 5월 25일 중에는 발송하여야 한다.<노무사 2023>
593. 2023년 5월 27일(토) 13시부터 9시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27일 22시이다.<노무사 2023>
594. 2023년 5월 21일(일) 14시부터 7일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28일 24시이다.(X)<노무사 2023>
595. 2017년 1월 13일(금) 1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36년 1월 12일 24시에 성년자가 된다.<노무사 2023>

제10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596.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법규가 일부무효의 효력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과 그 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4.6.11, 2003다1601).
597.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 일부만의 취소는 불가능하다.(X)<2017노무사>
598.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주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2017노무사>
599.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2017노무사>
600.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2017노무사>
60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이다.(X)<공인노무사>

2020>

60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공인노무사 2020>
603.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이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604.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면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138조: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605.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2017노무사>
606.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가 받은 이익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2020>
607.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 할 책임이 있다.<공인노무사 2022>
608. 담보의 제공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22>
609.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22>
610.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22>

[유동적 무효]

- ① 의의
- ②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변리사 2015등 빈출>
- ㉠ 거래계약상의 법률관계: ㉠ 이행청구×,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권×<변리사 2012등 빈출>, ㉣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변리사 2011등 빈출>, ㉤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무효·취소○<사시 2007>, ㉥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유동적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반환 청구可
- ㉡ 협력의무상의 법률관계: ㉠ 협력의무의 인부 - 협력의무 有<사시 2011등 빈출>, ㉡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여부×<사시 2011등 빈출>, ㉢ 협력의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배상액의 예정○, ㉤ 협력의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 여부×<변리사 2015등 빈출>, ㉥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변리사 2016>, ㉦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법행 2011등 빈출>
- [비교판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 ㉢ 확정적 유효로의 전환: ㉠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구역 지정의 해제<법행 2009등 빈출>
- ③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 당사자가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 ④ **관련판례**
- ㉠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쌍무계약에서 이행기를 정한 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4.23, 2008다50615).<사시 2013>
<변시 2016>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매매대금 지급에 관련된 약정도 모두 무효이고,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고, 다만 매매계약 체결 전 존재하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면 기존 채권채무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대판 2011.6.24, 2011다11009).<사시 2013>
-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다든 취지의 합의를 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제3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6.7.26, 96다7762).<사시 2011>
- ㉢ 매매의 대상에 장차 불하받게 되는 특정의 토지 외에 양도인이 경작하던 간척지에 대한 임차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임차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불하되기 전의 간척중인 토지로서 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만이 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없었다고 하여 당연히 양도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4.5.24, 93다58332).<법행 2009>
- ㉣ (구)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속하는 토지거래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효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거래당사자는 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나, 그 토지거래가 계약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비진의표시·허위표시 또는 착오) 또는 사기·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들 사유에 의하여 그 거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협력에 대한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대판 1997.6.27, 97다36118).<변시 2016><법행 2015>

- 611.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612.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대판 1997.12.12, 95다38240).
- 61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될 수 없다.(×)<공인노무사 2021>
- 61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유효가 된다.(×)

<공인노무사 2022>

61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대판 1994.6.24, 94다10900).
616.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다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2010.7.15, 2009다50308).
617.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고,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도 없다.(X)<2017 법무사>
618.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X)<감정평가사 2016>
61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21>
62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X)<공인노무사 2023>
62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공인노무사2023>
62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X)<공인노무사 2023>
62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이다.(X)<공인노무사2023>
624. 甲이 乙의 기망행위로 자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乙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X)<공인노무사2023>
625.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피보험자가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된다.(X)
626.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 때부터 유효하지만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
627. 무효인 법률행위일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628.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공인노무사 2021>
629.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2021>
63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가 이전되어 있더라도 취소는 전득자가 아니라 원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631. 미성년자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X)
63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부나 일부의 이행 등의 사유가 있어 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한다.(X)
633.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634.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35. 근로계약도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636.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 민법 제141조가 적용되어 취소된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X)<법무사 2018>
637.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나,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법무사 2018>
638.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법무사 2018>
639.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도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법무사 2018>
640.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되지 않는다.(X)<법무사 2018>
641.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인할 수 있다.
642.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X)
643.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644.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645. 무효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X)<노무사 2016>
646.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통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노무사 2016>
647.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노무사 2016>
648.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노무사 2016>
649.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노무사 2016>
650. 갑의 소유물을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 갑이 이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의 처분행위의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65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652.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취소권자인 무능력자가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X)
653.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채권양수인이 악의나 중과실이어서 양도가 무효이나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해 사후승낙을 한 경우 양도행위는 양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X)
654. 민법은 일부무효에 대한 규정을 일부취소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X)
655. 계약이 당연무효임이 판명되어 이미 이행한 부분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일방이 행위무능력자라면 그 무능력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X)
656.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6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허가를 받기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X)<세무사 2016>
658.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된 때로부터는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이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51789)<감정평가사 2016>
659.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하다.(X)
660.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661.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66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663. 무효인 법률행위이더라도 당사자가 그것이 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추인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X)
664.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공인노무사 2018유사>
665.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공인노무사 2018>
666.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18>
667.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18>
668.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된다.(X)<공인노무사 2018>
669. 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670. 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권 행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671. 채권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X)
672.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67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주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주인과는 달리 주인의 소급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674. 주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는데, 다만 법정대리인이 주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75.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담보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것이라도 주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X)
676. 취소의 발생원인은 법률행위 성립당시, 그리고 해제의 발생원인은 법률행위의 성립 이후의 사유에 의한다.
677. 취소와 해제는 모두 법률행위 일반의 효력소멸에 대하여 적용된다.(X)
678. 취소와 해제는 그 효과로 소급효를 갖는다.
679.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주인한 때에는 행위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X)
680. 취득시효완성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681. 채권의 목적이 수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민법상 소급효의 인부가 문제되는 경우]

소급효가 없는 것	①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의 취소(§7 - 철회의 의미로 해석) ②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영업허락 취소(§8② - 철회의 의미로 해석) ③ 부채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취소(§22) ④ 법인설립허가 취소(§38) ⑤ 무효행위의 주인(§139) ⑥ 조건성취(§147, 다만 의사표시에 의한 소급효 긍정) ⑦ 기한도래(§152) ⑧ 계약의 해지(§550)
판례에서 소급효 부정	①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채권양수인이 악의나 중과실이어서 양도가 무효이나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해 사후승낙을 한 경우 그때부터 유효(99다52817).
소급효가 있는 것	① 실종선고 취소(§29) ② 무권 대리의 주인(§133) ③ 취소(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을 원인으로 한 취소)(§141) ④ 소멸시효 완성(§167) ⑤ 선택채권의 선택(§386) ⑥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457) ⑦ 상계(§493) ⑧ 계약 해제(§548)

판례에 서 소급효 긍정	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본인의 추인(79다2151) ② 약정에 의한 무효행위의 소급적 추인(4281민상361) ③ 무효행위에 대한 채권적 소급적 추인(63다880) ④ 토지거래허가대상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경우(전합 90다12243)

682. 제한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무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2009.1.15, 2008다58367).
683.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2005.4.15, 2003다60297).
684.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3.3.28, 2002다72125). <변시 2015><변리사 2016>
685.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1999.3.26, 98다56607). < 변리사 2013>
686.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판 1998.2.10, 97다44737).
687. 민법은 무효행위의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대하여 별도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688.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689.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인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주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수 있다. < 변

리사 2011>

690.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대판 1997.12.12, 95다38240).
691.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법정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692.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8.11.27, 98다7421).
69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권자의 추인이 있는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공인노무사 2020>
694.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2020>
695. 매도인에게 부과된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공인노무사 2020>
696.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후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이 없으므로 매수인으로서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없다.(×)<사무관 2017>
697.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공인노무사 2019>
698. 취소권자가 이의의 보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일부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에도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19>
699.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19>
700.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종료하더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없다.(×)<공인노무사 2019>
70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도인은 거래허가 전이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19>

제11장 소멸시효

1. 제척기간

제소기간으로 보는 경우(204/205/406)그리고 가족법상 취소: ㉠ 채권자취소권(§406②)(判)<사시 2010>, ㉡ 혼인취소권(§816), ㉢ 점유보호청구권(判)<법행 2011등 빈출>, ㉣ 상속회복청구권(判)<사시 2010>

제소기간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매매나 도급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判)<사시 2010>,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취소권(判), ㉢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判)<사시 2014>

2. 소멸시효와의 관계

양자의 비교

구분	소멸시효	제척기간
입증곤란방지	○	×
소급효	○	×
중단	○	×
정지	○	×
의의포기	○	×
단축	○	×

(3) 관련판례

- 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판 2003.1.10, 2000다26425).<사시 2014><법행 2010>
- ② 제척기간의 경우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대판 1995.11.10, 94다22682).<변리사 2015>
- ③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2011.10.13, 2011다10266).<변리사 2015>
- ④ 수급인의 담보채입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2.11.15, 2011다56491).<법행 2014>

702.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나,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703.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이 완성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X)<2017노무사>
704.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공인노무사 2021>
705. 소멸시효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706.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X)<2017노무사>
707.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완성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
708.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709.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소멸시효기간이다.(X)
710. 당사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 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공인노무사 2021>
711.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는 다 같이 중단이 인정된다.(X)
712.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법무사 2018>
713.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1항), 그와 같은 하자 보수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670조 제1항). 이 때 민법 제670조 제1항에 정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법무사 2018>
714.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기한 해제권은 특별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형성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X)<법무사 2018>
715.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X)<2017노무사>
716.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717.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된다.(X)<2017노무사>(제166조 제2항).
718. 형성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719. 제척기간의 이익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한다.
720.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721.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없다.
722.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X)<변리사 2016>
723. 원본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이자채권도 소멸한다.
724.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725.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21>
726.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그 양육비를 지출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X)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1.7.29. 2008스67)
727. 채권 일부의 재판상 청구는 채권 전부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X)
728.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729.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730.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채권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X)<노무사 2016>
731.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X)<노무사 2016>
732.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노무사 2016>

733.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X)<노무사 2016>
 73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X)<노무사 2016>
 735. 불확정기한부 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진행된다.(X)
 736.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X)<갑평 2016>
 737.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X)<공인노무사 2021>

* (정확하게 암기)		
	소멸시효기산점	이행지체기산점
확정기한부	1. 기한도래시 익일(判) • 쌍무계약에 의한 채무이행(동시이행관계에 있어도) :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나 확정기한(이행기) 도래시 이다.	1. 기한도래시 익일(判) 2. 예외 ① 지시·무기명채권 : 증권제시하고 이행청구시 ② 채권자 협력(추심) 필요한 채무 : 채권자가 협력을 제공하고 이행청구시 ③ 쌍무계약에 의한 채무이행(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 변제제공 하고 이행청구시
불확정기한부	객관적도래시	채무자가 안때 (다음날)
기한없는 권리	1. 원칙 : 채권 성립 시 2. 예외 ① 불법행위는 특칙(§766) 있으며, ② 채무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판례) ③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 최고를 "할 수 있는 때" 로부터 상당기간 경과시	1. 원칙 : 채권자 이행 청고 시(이행청구(청고)받은 다음날) 2. 예외 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 "최고후" 상당기간 경과시 (§603②) ② 불법행위 : 불법행위시 (통.판)
정지조건부 · 시기부권리	조건·기한도래시	조건성취시에 채권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시점에서부터 기한 없는 채무(청고)를 받은 때
부작위 채권	위반 행위시	위반 행위시

738.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그 증서의 제시 없이도 이행기에 도달하면 당연히 지체책임을 진다.(X)<2017노무사>
 739. 지시채권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공인노무사 2018>
 740.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는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18>
 741.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기한 도래 사실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X)<공인노무사 2018>
 742.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공인노무사 2018>
 74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이행지체가 성립된다.<공인노무사 2018>
 744. 정지조건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성취 시부터 진행된다.<공인노무사 2021>

745. 채무자의 승인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유예해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약 그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746.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권리자의 주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된 날이 기산일이 된다.(X)
747. 점유권은 재산권이기는 하나 그 성질상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748. 학생에 대한 학교의 편입학허가, 대학교졸업인정, 대학원입학, 공학석사학위 수여 등이 그 자격요건을 규정한 교육법 제111조, 제112조, 제11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그 편입학허가 등의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뜻의 취소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도 않으며 그와 같은 자격요건에 관한 흠은 학교법인이나 학생 또는 일반인들에 의하여 치유되거나 정당한 것으로 추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대판 1989.4.11, 87다카131).
749.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1993.1.21, 91다411700).
750. 최고 또는 해지통고를 한 후 일정한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전제가 되는 최고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정해진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751. 시효가 중단된 경우는 그 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나, 시효의 정지의 경우에는 법정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752.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753.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20>
754.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스스로 계속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인도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X)
755.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
756.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757. 소멸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758.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시효소멸한다.
759.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그 양육비를 지출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X)
760.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761.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762.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 있어야 한다.(X)
763.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공인노무사 2021>
764.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765.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766.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그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
767.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대판 2006.8.24, 2004다26287).
768.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채무에 따라 결정된다.(X) <공인노무사 2020>
769.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770.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71.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772. 재산관계명시결정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는 다르므로 민법 제174조에서 정하는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재산관계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
773.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X)
77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775.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X)
776.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직접 청구를 받은 연대채무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X)
777.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되기 전에 승인한 것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X)<세무사 2016>
778.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779.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780.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의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X)
781.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X)
78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

- 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783.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전합 1992.3.31, 91다32053).
784.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1.21, 91다10152).
785.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종료일로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공인노무사 2020>
786.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진행된다.
787. 소멸시효의 실제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법원은 실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세무사 2016>
788.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르다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789.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2020>
790.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乙이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변시 2023>
791.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23>
792.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23>
793.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2023>
794.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23>
795.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한다.(×)<공인노무사 2023>
796.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797.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해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공인노무사 2020>
798.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07.8.23, 2007다28024).
799.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경우,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공인노무사 2022>
800.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중 하나의 채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공인노무사 2022>

801. 채권자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공인노무사 2022>
802.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고, 채무자가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공인노무사 2022>
803.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장권설정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장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더라도 그러한 응소행위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1.16, 2003다30890).<법행 2012등 빈출><변시 2016>
804. 채무자 겸 저장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하여 제기한 저장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장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805.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채권양도인이 최초의 재판상 청구를 한 때로부터 시효가 중단된다(대판 2005.11.10, 2005다41818). < 변시 2015등 빈출>[유사판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각되고, 그 후 6월 내에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대판 2009.2.12, 2008두20109).
806.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는 없다.(X)
807.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여도 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X)<공인노무사 2022>

• **중단사유** (1) 청구 / ① 의의 / ② 재판상의 청구 / ㉠ 의미: 권리의 주체가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이행의 소·확인의 소·형성의 소는 물론 본소·반소·재심의 소 등을 포함) [비교] i) 행정소송: 원칙×, 예외○(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사시 2007>, ii) 형사소송: 원칙×, 예외○(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변리사 2012등 빈출>, iii) 응소: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사시 2015등 빈출> but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행위×(判)<변시 2014, 2016>, ㉡ 시효중단의 범위 [a] 일부청구: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 경우 일부에만 중단효력발생<변리사 2013>, 다만 비록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전부에 중단효력발생(判)<사시 2011등 빈출> ⇒ 이러한 법리는 특정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의 경우에도 적용(判)<변시 2014>, ⑥ 어음·수표채권과 원인채권의 상호관계: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행사 可(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 ⇒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비교]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 ⇒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법행 2010등 빈출>], ㉔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소를 제기한 때(민소법 §238)

808.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809.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810.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사실을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한 바가 없는 경우 그 가처분은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부진정연대 채무자 간에는 가처분의 시효중단은 상대효이다.)
811. 민법 제17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란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판단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11.10, 2011다54686).
812.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81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대판 2006.7.27, 2006다32781).
814.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815.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판 2001.11.9, 2001다52568).
816.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 해당한다(대판 2009.11.26, 2009다64383).
817.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시효의 정지사유에 불과할 뿐 시효기간의 개시에 대한 법률상 장애라고 할 수 없다.
818.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819.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공인노무사 2018>
820.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18>
821.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공인노무사 2018>

822.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2018>
823.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공인노무사 2018>
824.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82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공인노무사 2021>
826.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827.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8.3.14, 2006다2940).
828.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도 없다.(×)
829.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3.2.28, 2011다21556).
830.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대판 1998.2.27, 97다53366).
831.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종성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사무관 2017>
83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인 때부터 진행되므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고 이후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때부터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2017 법원행시>
833.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2017 법원행시>
834.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으나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2017 법무사>
835.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甲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되 임대인 乙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권리의 불행사라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2023 법원행시>
836.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거래에 관한 것으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64). 따라서 민법 제163조 제3항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변시 2015>

837. 변리사에 대하여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변리사 2015>
838. 지방자치단체와 상인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2022 최신판례>
839.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X)<2022 최신판례>
840.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X)<세무사 2016>
841. 민법 제163조 제1항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2.22, 2005다65821).
84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항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5.10.13, 94다57800).
843.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의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판 2005.1.14, 2002다57119).
844.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아가 법 제666조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 대해 갖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 역시 3년이다.<2017 법무사>
845.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에서의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공인노무사 2020>
846. 음식료채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다.<공인노무사 2019>
847. 다음 중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법행 2023>

- | |
|---|
| ㄱ.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채권 |
| 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용역비채권 |
| ㄷ. 의사의 치료비 채권 |
| ㄹ.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보수채권 |
| ㅁ.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건설업자의 공사대금채권 |

{최신 꼭 봐야 할 판례}[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 가 세무사 등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대법원 2022.08.25 선고 2021다311111)

848.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그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2017 법무사>
849.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이다.<2017 법원행시>
850.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2017 법원행시>
851.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 새로운 약정이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기존 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면,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는 새로운 약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 때에 중단되었다.<2017 법원행시>
852.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포기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2019>
853.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의 하나이다.(×)<공인노무사 2019>
854.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공인노무사 2019>
855.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도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2023 법원행시>
856.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공인노무사 2019>
857.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2023 법원행시>

당사자의 원용

(1) 원용권자

- ① 원칙: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인 채무자만(원칙)
- ② 직접수익자에 해당○: i) 담보물의 제3취득자(判), ii) 물상보증인(判), iii) 손해행위의 수익자(判)<변시 2015등 민출>, iv)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判)<변시 2016등 민출>, v)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判), but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判)<법행 2014등 민출>
- ③ 직접수익자에 해당×: i)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대위○, 독자×)(判), ii) 채권자 대위소송에서의 제3채무자(判)

(2) 소멸시효의 남용

- ①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5.5.13, 2004다71881).<법행 2006>

- ②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신뢰한 권리자가 그로부터 시효정지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그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는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대판 전합 2013.5.16, 2012다202819).<변리사 2014>